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계획

- ❖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I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지원의 대상), 제7조(지원의 범위)

□ 추진배경

-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의 인권 보장 차원
 - (UN 아동권리협약)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 보장해야 함
- 거주지역, 이용 시설 등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보육환경 조성 필요
 - (어린이집) 9개 시도(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도내 7개 시군(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 순창) 지원
 - (유치원) 17개 시도교육청, 외국인 자녀 학비 지원

II 외국인 자녀 보육현황

□ 어린이집 이용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7.	비고
계(A=B+C)	38,978명	34,789명	31,554명	28,902명	24,309명	
내국인(B)	38,752명	34,533명	31,275명	28,560명	24,992명	
외국인(C)	224명	254명	277명	340명	373명	

- 도내 내국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는 최근 5년간 38,978명 → 24,309명(감 14,669명)으로 37.6% 감소한 반면, 외국인 영유아는 224명 → 373명(증 149명)으로 66.5% 증가

□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25. 7. 31. 기준)

구분	계	영아				유아			
		소계	0세	1세	2세	소계	3세	4세	5세
인원	373명	275명	80명	107명	88명	98명	39명	34명	25명

- 도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자녀 373명 중 영아는 275명으로 73.7%를 차지하고, 유아는 98명으로 26.3% 차지

III 세부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6. 3월

- 어린이집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에서 다음 연도 2월말 종료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 요건 충족자

- (지원요건)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
 - *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지원규모) 373명(영아 275명, 유아 98명)
 - * ‘26년 어린이집 이용 상황에 따라 변동 요인 있음
-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0~2세,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 * 0~2세 영유아보육료(국비) 사업에서 기관보육료 기지원
 - (3~5세, 유아) 누리과정 보육료의 30%

구분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부모보육료(월)	567천원	500천원	414천원	140천원		
지원금액(월)	175천원	154천원	127천원	84천원		
지원인원	80명	107명	88명	98명		
재원	도비 30%, 시군비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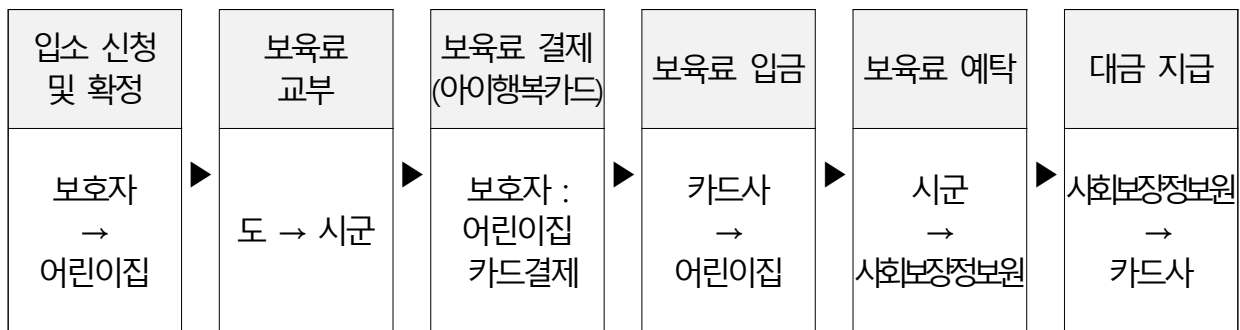
* ‘26년 0~2세 보육료 인상 기준 적용되었으며, 이후 보육료 인상 시 변동 금액 적용

□ **소요예산액 : 498,860천원(도비 149,658, 시군비 349,202)**

- (0세) 175천원 x 80명 x 10개월 = 140,000천원
- (1세) 154천원 x 107명 x 10개월 = 164,780천원
- (2세) 127천원 x 88명 x 10개월 = 111,760천원
- (3~5세) 84천원 x 98명 x 10개월 = 82,320천원

□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방법)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지원절차)



IV 추진경과 및 일정

- 교육청, 시군,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 협의 : ~'25. 7.
-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보건복지부) : ~'25. 10.
- 교육청, 외국인 자녀 지원 협의(수시) : '25. 11.
- * (교육청 의견) 지원 근거 부재로 추진 불가 입장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 확보 : '25. 12.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26. 1. ~ 2.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26. 3. ~

참 고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UN 아동권리협약

- 제2조(무상교육)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 제6조(지원의 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의 범위) ⑤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보육 교육 등